

#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996. 12. 23.

산업. 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1. 2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2. 20
-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윤병규)

### 가. 제안이유

“풍수해대책법” 이 “자연재해대책법” 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및3조).
-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5조및6조).
-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년월일 1996. 11. 21

제 출 자 서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것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다. 재해대책기금 관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 보고토록 규정함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내지 7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시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설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